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내 용어정비

- 1) 「연습훈련지원단」 파견장교의 업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명칭을 「비상대비정책협력단」으로 변경

나. 관련제도 개선

- 1) 「연습훈련지원단」에 우수한 파견장교 선발을 위해 추천 배수를 ‘3배수’ ⇒ ‘5배수 이상’으로 확대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발 및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연습훈련지원단”을 “비상대비정책협력단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3배수”를 “5배수 이상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연습훈련지원단(이하‘지원단’이라 한다.)”을 “비상대비정책협력단(이하 ‘협력단’이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지원단의 지원단장”을 “협력단의 협력단장”으로, “지원1팀장부터 지원4팀장”을 “협력1팀장부터 협력4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지원단”을 “협력단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원단”을 “협력단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원단장”을 “협력단장”으로, “지원팀장”을 “협력팀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연습훈련지원단”을 “협력단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지원단장”을 “협력단장”으로, “지원팀장”을 “협력팀장”으로 한다.

[별표2]를 “[별표1]”로 변경하고, [별표4]를 “[별표2]”로 변경한다

[별표1] 제목 “연습훈련지원단 편성표”를 “비상대비정책협력단 편성표”

로, “연습훈련지원단장”을 “비상대비정책협력단장”으로 한다.

[별표2] 직책 중 “지원”을 “협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----- 파견된 현역 장교(연습훈련지원단)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(비상대비정책협력단)----- ----- -----.
제3조(추천요구)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의 추천요구는 현 파견장교의 예상 공식 인원의 3배수로 한다.	제3조(추천요구) ----- ----- -----5배수 이상-----.
제6조(편성) ① 행정안전부에 현역 장교로 편성된 기구로 “연습훈련지원단”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지원단의 지원단장은 대령(육군) 장교로 보하며, 중령 장교 4명을 각각 지원1팀장부터 지원4팀장으로 보한다.	제6조(편성) ① ----- -----“비상대비 정책협력단”(--- “협력”---)----- -. ② 협력단의 협력단장은 ----- ----- 협력---- 협력-----.
제7조(업무통제)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.	제7조(업무통제) ----- -----협력----- -----.
제8조(직무)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	제8조(직무)협력----- --- .
제9조(임무) 지원단장 및 각 지원팀장의 임무는 별표 4와 같다.	제9조(임무) 협력---- 협력----- -----.

제11조(파견장교 근무평정) ① 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. 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팀장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.	제11조(파견장교 근무평정) ① 협력단 ----- ----- -----. ② 협력---- ----- ----- 협력----- -- 협력 ----- -----.
[별표2] 연습훈련지원단 편성표 연습훈련지원단장	[별표1] 비상대비정책협력단 ----- 비상대비정책협력단장
[별표4] 파견장교 임무 지원단장, 지원1·2·3·4팀장	[별표2] ----- 협력---, 협력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337